파주시공고 제2026-3003호

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20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ㅇ 상위법령인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에 따라 '시군구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'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, 전반적인 조문 및 용어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재난안전대책본부 직제 구성 총괄조정관 추가 개정(안 제4조)
○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신설(안 제7조의2, 별표 1의2)
○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 관련 규정 개정(안 제8조, 제12조)
○ 사무의 전결사항 관련 규정 정비(안 제24조)
○ 재난상황 홍보 관련 규정 신설(안 제25조)
○ 기타 전반적인 조문 정비 및 별표 현행화(안 제16조, 제17조, 별표 1, 별표 4, 별표 5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6년 12월 11일까지(21일간)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생년월일·연락처·의견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안전총괄과 사회재난예방팀)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, 안전총괄과(우 10932)
○ 전화 : 031-940-4691 / 팩스 031-940-4679 / 이메일 abcd23456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